

파리協約의 現況과 內容

〈上〉

金 守 東

〈特許廳 國際法務官〉

① 序 言

우리는 1978年 12月 1日字로 WIPO加入文書를 WIPO事務局에 寄託함으로써 今年 3月 1日字로 發效하게 되어 本格的인 特許國際化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韓國經濟가 100億弗 輸出, 1000\$ 弗 所得을 이미 넘어섰고 國際舞臺에 幅 넓게 進出하고 있으며 漸次 開放經濟體制로 移行하고 있음에 따라 先進技術導入의 必要性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法的, 制度的, 技術的 受容態勢가 未備한 狀態에 있다.

韓國經濟가 指向하는 重化學工業의 育成을 뒷받침할 技術開發을 效果의으로 遂行키 爲하여서는 前提要件인 工業所有權制度의 劃期的發展이 時急함은 말할 必要도 없다. 더구나 急速히 發展하는 先進技術動向의 把握 및 導入, 國際工業所有權界의 움직임에 대한 能動的對處, 激增하는 外國出願에의 對備를 爲하여 우리 特許制度의 國際化를 서둘러야 할 時點에 온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가 WIPO 가입을 實現하여 그 會員國이 되었으나 아직은 WIPO Conference(協議會)의 멤버이고 파리同盟 또는 베른동맹의 會員國임을 要件으로 하는 總會會員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特許國際協力方式은 兩者協定 또는 互惠主義確認方式에 의하여 왔고 公業소유권에 관한 多者條約인 Paris協約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WIPO가입을 契機로하여 Paris協約의 現況과 內容을 간추려 봄으로써 앞으로 Paris協約 檢討資料에 對하고자 한다.

② 파리協約의 內容

1. 正式名稱=파리협약의 正式名稱은 國際工業所有權保護同盟(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다. 그러나 보통은 줄여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이라고 부르고 있고 파리협약의 加入國으로 構成된 一團의 集團을 파리동맹(Paris Union)이라고 한다.

2. 沿革: 파리협약은 1883. 3. 20에 Paris에서 11個國이 工業所有權保護同盟을 結成함으로써 發足되었고 그후

1900. 12. 14. Bruesels

1911. 6. 2. Washington

1925. 11. 6. Hague

1934. 6. 2. London

1958. 10. 31. Lisbon

1967. 7. 14. Stockholm

에서 各各 改正된 30個條로된 多者間條約이다.

3. 加入國: 1978. 1. 1現在 파리協約加入國은 88 개국으로 되어 있으며(名單別添) 自由中國, 北傀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日本은 이미 1890년에 가입을 完了하였고 中共이 1980년에 가입을 目標로 準備作業을 進行시키는 것 같다.

4. 파리協約의 3大基本原則

가. 屬地主義(第3條)

各國家는 同盟協約에서 定하는 範圍안에서 獨立인 法體制를 갖추도록 하며 各國家의 그 領域內에서 效力이 있는 것으로 定하고 있다.

나. 內國民待遇(第2條 3)

公業소유권의 보호에 關하여 各同盟國은 다른

聯盟國의 國民에 대하여 自國民에 許與하는 것과 同一한 保護를 許여해야 하며 如何한 方法이던지 差別取扱을 해서는 안된다.

다. 優先權(第4條)

聯盟國중 한나라에 出願한 最初의 正式 출원에 根據하여 出願人은 一定期間(6~12月)에 다른 모든 同盟國에 출원하여 최초로 出원한 동일한 日字에 出원한 것을 認定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期間을 攄으로써 出원인이 몇개 나라에 攄 보호받기를 願하는 各나라에 同時에 提出할 必要가 없고 自由意思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를 決定하고 그 보호를 確保하기 위하여 取해야 할 節次를 留意하여 書類를 作成하게 되는 것이다.

5. 加入: 本聯盟 가입은 모든 국가에 開放되어 있으며 實際로 WIPO事務總長에게 加入寄託書를 제출하여 各聯盟國에 通報함으로써 가입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가입하는 國家는 特許廳을 獨立機構로 하고 모든 特許資料를 公衆에게 알리기 위하여 Central Office를 設置해야 한다는(第12條) 勸獎要件이 있다.

6. 加盟國間의 同盟의 意義

가. 동맹은 管理面에서나 財政面에서 單一한 實在를 形成한다.

나. 各加盟國은 다른 모든 동맹國과의 關係에서 條約上의 拘束을 받게 된다.

다. 동맹의 가입과 脫退는 파리협약의 最新條約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효력은 모든 改正條約을 包含한 同盟全體에 미친다.

7. 파리同盟의 管理機關

가. 파리協約의 總會(第13條)

1) 總會의 構成: 同盟國政府의 各代表 1人으로 구성한다.

2) 總會의 任務(2항)는 다음과 같다.

○ 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조약의 實施에 관한 問題의 處理

○ WIPO事務局에 대한 改正會議 準備에 관한 指示

○ 기관 事務總長의 동맹에 관한 報告活動에 關於하여 檢討承認하여 동맹의 權限事項에 대한 필요한 지시

○ 總會의 執行委員會의 構成國 選定

○ 報行委員會의 報告 및 活動을 承認 또는

검토 및 지시

○ 事前計劃決定, 豫算決算에 관한 事項

○ 동맹의 財政規則 採擇

○ 동맹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專門家委員會 및 作業部會 設置

○ 동맹의 非構成國이 총회의 會合에 Observer로 出席하는 것에 대한 결정

○ 本協約의 修正을 採擊하는 일

○ 其他 本協約 任務遂行

3) 表決(4項)

○ 各構成國은 1票를 가진다.

○ 議事定足數: 構成國의 1/2

○ 議決定足數: 2/3以上의 多數

4) 會議召集

○ 定期會: 사무국장이 3년마다 1회召集한다.

○ 臨時會: 執行委員會의 要請 또는 總會構成國의 1/4이상 的 要請時 召集된다.

나. 執行委員會(第14條)

1) 構成: 總會構成國中 에서 총회에서 選出된 國家로 구성된다.

2) 數: 總會構成國數의 1/4로 구성된다.

3) 任期: 總會會期の 終了時부터 다음 總會通常會期の 종료시까지(1年)이다.

4) 任務는 다음과 같다.

○ 總會의 議事日程作成

○ 事務總長이 作成한 동맹의 事業計劃案 및 3年豫算案에 關於하여 총회에 提案하는 일

○ 사무총장이 작성한 年次事業計劃 및 年次決算에 關於하여 사업계획 및 3년예산의 範圍內에서 결정하는 일

○ 사무총장의 定期報告 및 年次會計 監査報告에 意見を 총회에 제출하는 일

○ 총회의 결정에 따라 行해지는 동맹의 事業計劃實施를 위한 필요한 措置

○ 其他 報行委員會에 賦與된 任務遂行

5) 會 期

○ 通常會期: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거 每年 1회 會合한다.

○ 臨時會期: 사무총장의 發議 또는 집행위원회의 議長 혹은 그 구성국의 1/4이상 的 요청시 소집된다.

6) 表決: 1國1票, 議事定足數는 構成國 1/2, 議決은 單純多數로 한다.

7) Observes : 집행위원회의 非構成國인 同盟國은 집행위원회의 회합에 observer로서 出席할 수 있다.

다. 國際事務局(第15條)

1) 事務局은 同盟의 維持發展을 위한 各種行政事務를 遂行하는 常設機關이다.

2) 사무총장이 동맹의 首席行政官이며 동맹을 代表한다.

3) 國際事務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情報蒐集 및 頒布
- 定期刊物 發刊
- 各同盟國에 工業소유권보호에 관한 정보제공
- 총회의 지시에 따라 본협약의 改正會議 準備作業
- 其他 事務局에 賦課된 任務遂行

8. 同盟의 豫算(第16條)

가. 財源은 다음 項目으로 充當된다.

- 同盟國의 分擔金
- 國際事務局이 동맹의 이름으로 提供하는 役務에 대한 料金
- 刊物物 販賣代金 등
- 贈與 또는 補助金
- 其他 雜收入

나. 各同盟國의 年次分擔金 單位數

等級	單位	1979年分擔金(스위스 Fr \$1: 1.55Fr)
1	25	275,100
2	20	220,050
3	15	165,050
4	10	110,050
5	5	55,000
6	3	33,000
7	1	11,000

- 等級選擇은 自由이며 變更도 可能하다.
- 分擔金 納入義務發生 基準은 1月 1日이다.

9. 파리協約의 特別約定(第19條)

同盟國은 파리협약의 規定에 抵觸되지 않는 한 別도로 相互間의 工業소유권보호에 관한 特別한 約定을 할수 있는바 이에 의거, 동맹국간에 다음과 같은 各種 條約이 締結되고 있다.

파리協約의 特別約定 現況

協定名	締結日字	加入國數	備考
虛偽의 또는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原產地表示의 防止에 관한 Madrid協定	1891.4.14	32個國	
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Madrid協定	1891.4.14	24個國	
工業意匠의 國際寄託에 관한 Hague協定	1925.11.6	15個國	
標章의 登錄을 위한 商品 및 用役의 國際分類에 관한 Nice協定	1957.6.15	31個國	
原產地名稱의 保護 및 그의 國際登錄에 관한 Lisbon協定	1958.10.31	15個國	
新變種植物의 保護에 관한 國際協定	1961.12.2	8個國	
工業意匠의 分類를 確立하기 위한 Locarno協定	1968.10.8	16個國	
特許協力條約(PCT)	1970.6.19	35個國	
國際特許分類를 위한 Strasbourg協定(IPC)	1971.3.24	24個國	
商標登錄條約(TRT)	1973.6.12		미발효 3개국이 加入書寄託
標章의 圖形要素의 國際分類를 確立하기 위한 Vienna協定	1973.6.12		미발효 2개국이 批准書寄託
Type Face(字母)의 保護 및 國際寄託을 위한 協定	1973.9.12		미발효 1개국이 批准書寄託

(계속)

※

※